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가로등 조명관제시스템 구축공사 분리발주 등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 ②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 ③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지방○○○○ ○○○
(전 ○○과)
- ④ 광주광역시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6. 1. 16.부터 2017. 7. 20.까지, 지방○○○○○
○○○은 2015. 7. 31.부터 2017. 1. 23.까지 ○○과에서 가로등 조명관제시스템구
축공사 사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과 지방○○○○ ○○○은 2015. 1. 23.부터 2016. 1. 3.까지, 지방○○
○○○ ○○○은 2016. 1. 16.부터 2017. 1. 23.까지 ○○과에서 가로등 조명관제
시스템구축공사 LED가로등기구 물품 구매·계약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입

찰에 부쳐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¹⁾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²⁾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2단계경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한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하게 기준금액인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

2)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그러나 광주광역시(○○과)에서는 매년 총괄예산으로 부기된 도로조명관제 시스템구축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2015년 ‘○○로’, ‘○○로’ 등 8건과 2016년 ‘○○로’, ‘○○로’ 등 8건의 공사를 노선별(공사량/시기별)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이 각 구청별 유지관리와 하자관리 등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총 16건(공사비 1,347 / 관급자재 640백만원)으로 부적정하게 분리·발주하였다.

이와 관련 위 관서 ○○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건별로 분리하여 계약 요청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를 분리하여 계약하였고, 동 공사명 별로 소요되는 관급자재 중 LED가로등기구 16건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하지 않고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라는 사유로 모두 3자단가로 구매·계약함으로써, 10%(63백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³⁾.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 등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되도록 공사량을 부적정하게 분할 설계하여 발주하거나, 동 공사 소요 자재(물품) 구매 등의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발주 및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성공사의 경우에 LED 가로등기구를 특정업체와 선택·계약을 하면서 금품수수사건이 발생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 (타부서 발주 사례)
- ○○○○조성공사 관련 사건번호 2016고단0000,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 김○○)